|  |  |  |
| --- | --- | --- |
|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집중 판촉행사 활동 관리 잠정규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77호<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집중판촉행사 활동 관리 잠정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2015년 9월 2일**제1장 총칙****제1조**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집중판촉행사 활동을 규율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평하고 질서적인 온라인 상품 및 서비 거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법>, <반부정당경쟁법>, <광고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이 규정에서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집중판촉행사 활동(이하 '온라인 집중판촉행사'로 약침)이라 함은 특정 시간대에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를 조직하여 온라인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라 함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를 조직하는 제3자 거래 플랫폼을 지칭한다.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등록하여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기업법인이어야 한다.**제4조** 이 규정에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라 함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자영업자, 기타 경제조직 및 거래 플랫폼에 실명으로 가입한 자연인을 지칭한다.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취득하고 웹페이지의 현저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제5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자발성, 공평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며 상도덕과 공서양속을 지켜야 한다.**제2장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의 의무****제6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경영주체 신분을 심사하고 등기해야 한다.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판촉행사 활동 기간 그의 플랫폼상에 발표되는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내용과 발표시간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제8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판촉행사 활동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공상행정관리 관계 법률, 법규, 규장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플랫폼 경영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여 해당 행위를 제지시켜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한 제3자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제9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웹사이트의 현저한 위치에 현저한 방식으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의 기한, 방식과 규칙 등 정보를 사전 공시해야 한다.**제10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약관의 형식으로 계약금 불환급, 예매상품의 7일내무이유환불 불적용, 상품의 완전성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권, 환불제한 조건 증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 불합리한 규정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제10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검증이 가능한 통계결과에 근거하여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의 거래량, 거래액을 발표하여야 하고 거래량, 거래액에 대한 허위선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를 위하여 거래, 거래량 또는 허위 구매자 평가를 조작해서는 아니된다.거래, 거래량 또는 허위 구매자 평가의 조작이라 함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부정당한 수단으로 그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량, 경영자 매장 평점, 신용 포인트, 상품 평점, 불리한 평가 삭제 등 경영자의 상업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제11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플랫폼 내의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기타 제3자 거래 플랫폼이 조직하는 판촉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제3장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의****제12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자는 경영자는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매장 웹페이지의 현저한 위치에 현저한 방식으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의 기한, 방식과 규칙을 공시해야 한다.**제13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자는 경영자가 진행하는 광고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내용을 포함되어 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조건부 판촉 광고의 경우 판촉 광고 웹페이지에 부가조건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한다.**제14조** 다음 각 호의 부정당한 수단을 이용한 판촉행사 활동을 금지한다.(1) 상품의 명칭, 용도, 성능, 생산지, 규격, 등급, 품질, 가격 또는 서비스의 항목, 가격 등 관련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2) 판촉행사에서 증정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증정품, 무료서비스의 명칭, 수량과 품질, 이행기간과 방식, 안전주의사항과 위험 경고, A/S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3) 거래, 거래량 또는 허위 구매자 평가를 조작하는 등 부정당한 방식으로 상업신용을 과대포장하여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하는 경우.**제15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판촉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가 매진된 경우 판촉 페이지, 구매 페이지를 통해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제16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판촉행사 활동에서 판매, 증정하는 상품은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명문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증정해서는 아니되며 판촉을 이유로 상품의 품질을 낮춰서도 아니된다.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서 증정하는 상품은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수리·교환·환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제17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판촉행사 활동에서 소비 포인트 또는 할인권을 증정하는 경우 소비 포인트 또는 할인권의 사용조건, 사용방법과 사용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소비 포인트 또는 할인권의 사용조건, 사용방법과 사용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에 유익한 변경은 예외로 한다.**제18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판촉행사 활동에서 경품 추첨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경품 추첨방식을 공시해야 하며 경품의 수량과 품질을 허위적으로 표시하거나 경품 추첨을 허위적으로 진행하거나 경품 추첨을 조작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법률책임****제19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가 이 규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제20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가 이 규정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계약행위 감독처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제21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 또는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이 규정 제10조, 제14조, 제18조를 위반하는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제22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가 이 규정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제23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이 규정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제24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이 규정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품품질법>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제5장 부칙**1.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网络商品和服务集中促销活动管理暂行规定**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77号《网络商品和服务集中促销活动管理暂行规定》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0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5年9月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网络商品和服务集中促销活动，保护消费者和经营者的合法权益，维护公平有序的网络商品和服务交易秩序，根据《消费者权益保护法》《反不正当竞争法》《广告法》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网络商品和服务集中促销活动（以下简称网络集中促销），是指在特定时间内网络集中促销组织者组织网络集中促销经营者在互联网上，通过提供优惠条件开展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营活动。 　　**第三条** 本规定所称网络集中促销组织者,是指组织网络集中促销的第三方交易平台。 　　网络集中促销组织者应当是经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注册并领取营业执照的企业法人。 　　**第四条** 本规定所称网络集中促销经营者,是指在网络集中促销中向消费者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企业、个体工商户、其他经济组织以及已在交易平台办理实名登记的自然人。 　　网络集中促销经营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属于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应当取得行政许可的，应当依法取得有关许可并在网页显著位置予以公示。 　　**第五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经营者应当遵守相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遵循自愿、公平、诚实信用的原则，遵守商业道德和公序良俗。 **第二章 网络集中促销组织者的义务**　**第六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应当对网络集中促销经营者的经营主体身份进行审查和登记。 　　网络集中促销组织者应当按照《网络交易管理办法》的规定，记录、保存促销活动期间在其平台上发布的商品和服务信息内容及其发布时间。 　　**第七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应当对网络集中促销经营者的促销活动进行检查监控，发现有违反工商行政管理法律、法规、规章的行为的，应当向平台经营者所在地工商行政管理部门报告，并及时采取措施制止，必要时可以停止对其提供第三方交易平台服务，并予公示。 　　**第八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应当在网站显著位置并以显著方式，事先公示网络集中促销的期限、方式和规则等信息。 　　**第九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不得采用格式条款设置订金不退、预售商品不适用七日无理由退货、自行解释商品完好、增加限退条件等排除或者限制消费者权利、减轻或者免除经营者责任、加重消费者责任等对消费者不公平、不合理的规定。 　　**第十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应当依据可以查验的统计结果公布网络集中促销的成交量、成交额，不得对成交量、成交额进行虚假宣传，不得直接或者间接为网络集中促销经营者虚构交易、成交量或者虚假用户评价。 　　虚构交易、成交量或者虚假用户评价是指，网络集中促销经营者通过不正当方式获得关于其销售商品的销量、经营者店铺评分、信用积分、商品好评度评分、删除不利评论等有助于其产生商业利益、妨害消费者和其他经营者合法权益的行为。 　　**第十一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不得违反《反垄断法》《反不正当竞争法》等法律、法规、规章的规定，限制、排斥平台内的网络集中促销经营者参加其他第三方交易平台组织的促销活动。 **第三章 网络集中促销经营者的义务**　　**第十二条** 网络集中促销经营者除应当依照《网络交易管理办法》第十一条的规定提供商品或者服务的信息外，还应当在网店页面显著位置并以显著方式公示网络集中促销的期限、方式和规则。 　　**第十三条** 网络集中促销经营者的广告应当真实、准确，不得含有虚假内容，不得欺骗和误导消费者。 　　附条件的促销广告，应当将附加条件在促销广告页面上一并清晰完整表述。 　　**第十四条** 禁止采用下列不正当手段进行促销活动： 　　（一）标示商品的品名、用途、性能、产地、规格、等级、质量、价格或者服务的项目、价格等有关内容与实际不符； 　　（二）在促销中提供赠品、免费服务的，标示的赠品、免费服务的名称、数量和质量、履行期限和方式、安全注意事项和风险警示、售后服务等与消费者有重大利害关系的信息与实际不符； 　　（三）采用虚构交易、成交量或者虚假用户评价等不正当方式虚抬商誉，损害消费者和其他经营者合法权益。 　　**第十五条** 网络集中促销经营者在促销的商品或者服务销售完毕后，应当在促销页面、购买页面及时告知消费者。 　　**第十六条** 网络集中促销经营者在促销活动中销售、附赠的商品应当符合《产品质量法》的规定，不得销售、附赠国家明令禁止销售的商品，不得因促销降低商品质量。 　　网络集中促销中附赠的商品，应当依照《消费者权益保护法》和《产品质量法》的规定提供“三包”服务。 　　**第十七条** 网络集中促销经营者在促销活动中赠送消费积分或者发放优惠券的，应当标明消费积分或者优惠券的使用条件、方法和期限。 　　网络集中促销经营者改变消费积分或者优惠券使用条件、方法和期限的，应当征得消费者同意。增加有利于消费者权益的变更除外。 　　**第十八条** 网络集中促销经营者在促销活动中开展有奖促销的，应当符合《反不正当竞争法》的规定并公示可查验的抽奖方法，不得虚构奖品数量和质量，不得进行虚假抽奖或者操纵抽奖。 **第四章 法律责任**　　**第十九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违反本规定第六条规定的，依照《网络交易管理办法》第五十条的规定查处。 　　**第二十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违反本规定第九条规定的，依照《合同违法行为监督处理办法》的规定查处。 　　**第二十一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或者网络集中促销经营者违反本规定第十条、第十四条、第十八条规定的，依照《反不正当竞争法》的规定查处。 　　**第二十二条** 网络集中促销组织者违反本规定第十一条规定的，依照《反垄断法》《反不正当竞争法》等法律、法规、规章的规定查处。 　　**第二十三条** 网络集中促销经营者违反本规定第十三条规定的，依照《广告法》的规定查处。 **第二十四条** 网络集中促销经营者违反本规定第十六条规定的，依照《消费者权益保护法》《产品质量法》等法律、法规的规定查处。 **第五章 附 则**　　**第二十五条** 本规定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二十六条** 本规定自2015年10月1日起施行。 |